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정혜경 · 조정식
문정복 · 차지호 · 홍기원
김문수 · 진선미 · 이용우
박지원 · 박 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,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, 기후변화교육 · 탄소중립교육 ·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,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‘기후변화환경교육’을 ‘기후환경교육’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).

법률 제 호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의 제목 “(기후변화환경교육)”을 “(기후환경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”을 “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<u>기후변화환경교육</u>)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 민이 기후변화 등에 <u>대응하기</u> <u>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</u> <u>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</u> · 실시하여야 한다.	제22조의2(<u>기후환경교육</u>) ----- ----- ----- <u>대응하고, 지속가</u> <u>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</u> <u>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</u> <u>관한</u> ----- -----.